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시 채무조정 의무화 등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31호, 2200656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I . 검토의견: 재난시 채무조정 의무화 등	5

I. 제안경위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19.

다. 회 부 일 : 2024. 6. 27.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19.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았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재난시 채무조정 의무화 등

-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한 영업제한 또는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하면 은행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은행법 개정안 제30조의3 신설), 금융위원회는 같은 상황이 발생시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해당 조치를 포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금융소비자법 개정안 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제30조의3(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상환유예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

현행	개정안
	<u>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① · ②(생략) <신설>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u>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u>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감소·투자 위축·실업증가·무역감소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집합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시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이나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부담을 은행 등 금융기관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상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	금융소비자 ¹⁾
요건	① 자연재난/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로 인해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내용	사업자 또는 그 임대인이 은행에 조치사항 신청 →은행이 해당 조치 이행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 명령 가능
조치 사항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위반시 제재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 제69조제4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처분(법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법 제52조)

□ 첫째, 재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각 법률은 재난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²⁾하고 있음. 그 외에도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에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를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단서 생략)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후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³⁾을 둘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 재난 발생이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은행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바,⁵⁾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⁶⁾

○ 이에 대하여 은행연합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은 법을 통해 민간 기업인 은행에 맡기기보다 정부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은행권의 지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둘째, 일정 요건 충족시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은행의 자본 건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5)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6) 이외에, 은행연합회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既체결된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임.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⁷⁾을 보유하는 등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채무조정을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은행의 부담이 가중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셋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 채무조정을 규율하고 있는 타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와 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⁹⁾은 금융기관과 채무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적 채무조정을 규율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¹⁰⁾은 법원이 채무 변

7) 충당금 적립(예상 손실에 대비), 자기자본 확충(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등

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채무조정(제31조~제40조)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제70조~제77조)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의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또는 파면, 면책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

경을 강제하는 공적 채무조정을 규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채무조정제도 외에 개정안과 같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현행 채무조정 규율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 금융기관이 현재도 재난 등 발생시 소상공인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해 대출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긴급 자금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행 등 금융권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피해주민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¹¹⁾하였으며,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인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신규 대출과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왔음.

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제도’가 5차례 연장 시행되었으며, 2024년 3월 현재 대출 차주 29만명, 대출잔액 61조원 규모임.

[최근 2년간 재난 시 은행권 금융지원 주요 내용]

재난명	지원대상	지원항목	상세 지원내용
1)서천시장 화재 (’24.1월, 충남 서천)	가계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피해 거래고객 긴급생활자금
2)수해 피해 (’23.7월, 전국)		기존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 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3)대형 산불 (’23.4월, 10개 지자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피해기업·소상공인 대상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
4)태풍 힌남노 (’22.9월, 전국)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지 원	피해기업·소상공인 기존 대출금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자료: 은행연합회)

- 개정안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에서는 법률에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을 한정함에 따라 금융지원을 탄력적으로 하기 어렵고, 법적 의무 이외의 지원책 도입을 기피하는 경우 은행권의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